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17-01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 일 시 : 2014년 4월 17일(목) 14:00~16: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손삼길 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연구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희롱 조사·구제기관으로서 매년 200건이 넘는 성희롱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처리된 성희롱 사건은 1,5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성희롱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모호했던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정립하였으며, 다양한 성희롱 예방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이 진료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성희롱 판단기준과 효과적인 예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진료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연구로서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에 연구진들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과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 간의 인식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바쁘신 일정에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손심길**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14:0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좌장 : 김규홍(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시 간	구분	내용
14:00~14:05		등록 및 접수
14:05~14:10	인사말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4:10~15:10	발제	1. 의료기관 이용자의 진료과정 성희롱 경험 실태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 진료과정 성희롱에 대한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3. 진료과정 성희롱 규제 현황과 대안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15:10~16:10	토론	1.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2.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3. 박주희 (대한한 의사협회 이사) 4. 이영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16:10~16:30	종합토론	참가자 전체

폐 회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차 례

- ◆ 발제 1
 - 의료기관 이용자의 진료과정 성희롱 경험 실태 1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발제 2
 - 진료과정 성희롱에 대한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 27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 발제 3
 - 진료과정 성희롱 규제 현황과 대안 29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 ◆ 붙임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45



◆ 토론

- 토론문 59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 59
 -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65
 - 박주희 (대한한의학협회사) / 71
 - 이영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 77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발제 1

의료기관 이용자의 진료과정 성희롱 경험 실태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의료기관 이용자의 진료과정 성희롱 경험 실태

2014. 4.

백 미 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1. 개념 : 성희롱

-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것

➡ 강간,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성폭력 범죄들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해 성희롱이 개념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연구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 및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적 침해도 배제하지 않고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범위에 포함

1. 개념 : 의료진

- **의료진** : 의료인 및 의료기사 통칭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료법 제2조 제1항)
-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제2조)

1. 개념 : 진료과정의 성희롱

-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하는 경우

2. 의료기관 이용자 조사

- **이용자 설문** : 일반 성인 여성 1,000명 대상 인터넷 패널조사
- **상담일지 분석** : 전국 3곳의 민간 성폭력상담소에서 2010년 이후 접수된 진료과정 성희롱 사례
- **FGI 및 심층면접** : 진료과정 서 성희롱 피해자 3명, 지원자 9인

3. 이용자 설문조사

- **목적** : 진료과정 성희롱 이용자 실태조사는 진료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과 이와 관련한 이용자 인식수준 파악
- **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진료를 위해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자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 (표본은 주민등록통계에 따른 지역별, 연령대별 인구비례로 할당 추출)
- **방법** : 온라인 조사 실시, SPSS 분석
- **기간** : 2013. 10. 17. ~ 22
- **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 이용자 설문조사 : 응답자 특성

구분		인원(명)	%
전체		1,000	100.0
연령대	20대	221	22.1
	30대	251	25.1
	40대	277	27.7
	50대	251	25.1
거주지 규모	대도시	477	47.7
	중소도시	437	43.7
	군/읍/면	86	8.6

3. 이용자 설문조사 : 응답자 특성

구분		인원(명)	%
전체		1,000	100.0
혼인상태	미혼/비혼	356	35.6
	기혼	608	60.8
	이혼/사별	36	3.6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하	16	1.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66	26.6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656	65.6
	대학원 재학 이상	62	6.2

3. 이용자 설문조사 : 응답자 특성

구분		인원(명)	%
전체		1,000	100.0
거주지	서울	214	21.4
	부산	71	7.1
	대구	49	4.9
	인천	58	5.8
	광주	30	3.0
	대전	31	3.1
	울산	24	2.4
	경기	244	24.4

3. 이용자 설문조사 : 응답자 특성

구분		인원(명)	%
전체		1,000	100.0
거주지	강원	28	2.8
	충북	29	2.9
	충남	36	3.6
	전북	33	3.3
	전남	32	3.2
	경북	48	4.8
	경남	62	6.2
	제주	11	1.1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진료 상황별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번호	행위유형	유경험
1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외모나 신체, 옷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함	30(3.0)
2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에게 성적인 농담(음담패설 등)이나 성적 비하의 의미가 있는 말을 함	14(1.4)
3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함	23(2.3)
4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해 비난이나 비하의 의미가 있는 말을 함	14(1.4)
5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먼저 자신의 성생활, 성경험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함	15(1.5)
6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 수 있는 상태에서 나의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어봄	25(2.5)
7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성적인 의미가 있는 몸짓이나 행동을 함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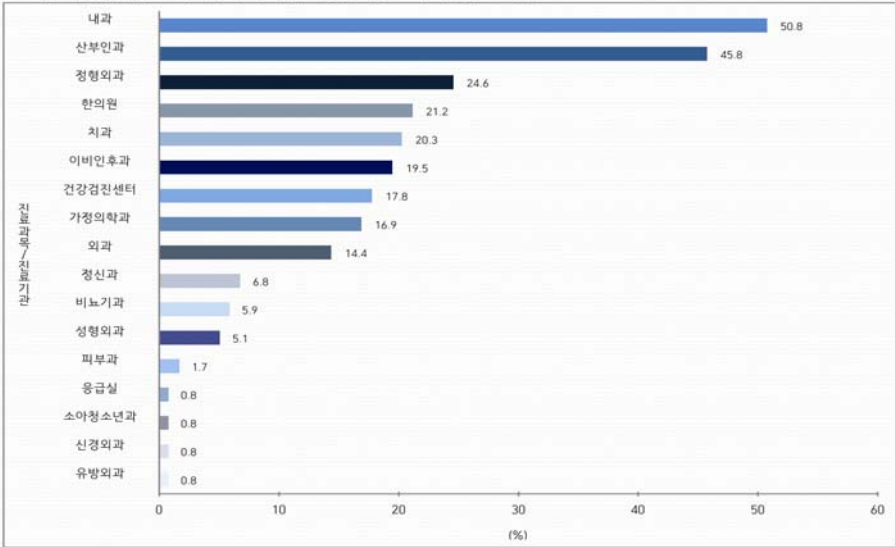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진료 상황별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번호	행위유형	유경험
8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보여줌	10(1.0)
9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거나 추파를 보냄	19(1.9)
10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음	46(4.6)
11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착의 또는 탈의과정을 의도적으로 봄	5(0.5)
12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나의 신체를 노출시킴	19(1.9)
13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나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함	23(2.3)
14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적이 있음	2(0.2)
계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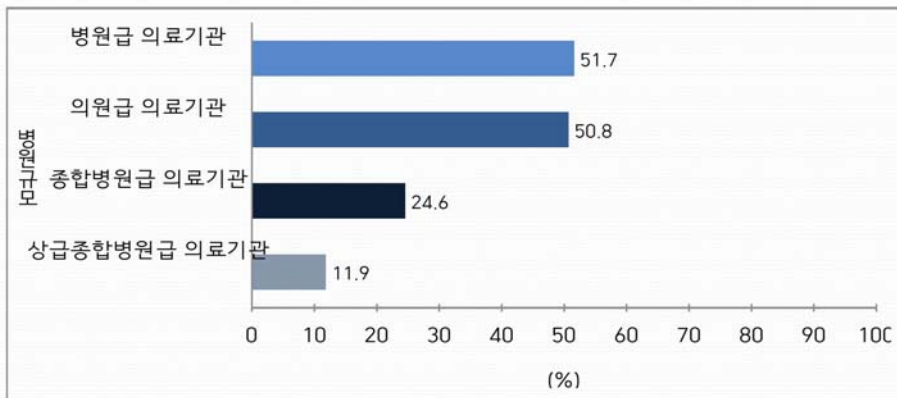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진료과목/진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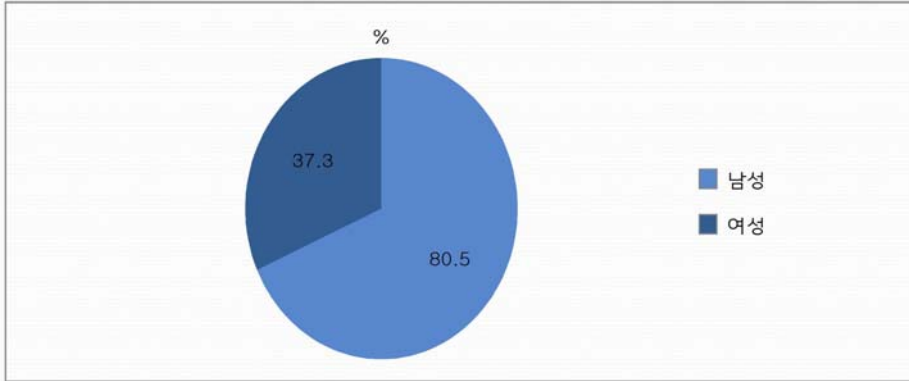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의료기관 규모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준 의료진 성별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후 대응행동

대응행동		건(%)
적극적으로 대응함	해당 의료인/의료기사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함	12(10.2)
	병원 직원(간호사, 수납·안내직원 등)에게 귀하의 경험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함	8(6.8)
	병원의 책임자(병원장, 원무과장 등)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함	5(4.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0(0.0)
	경찰에 신고함	1(0.8)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후 대응행동

대응행동		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함	1(0.8)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가지 않음	37(31.4)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	62(52.5)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후 대응하지 않은 이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	건(%)
진료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45(46.9)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29(30.2)
대응방법을 몰라서	16(16.7)
이후 진료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4(4.2)
이야기하기 민망해서	1(1.0)
모름	1(1.0)
계	96(100.0)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번호	상황	성희롱
1	산부인과 환자가 여성 의사의 진료를 신청하였는데, 질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사전 양해나 설명 없이 환자가 신청한 여성 의사와 함께 남성 의사가 들어와 환자의 신체를 보는 경우	711 (71.1)
2	산부인과 환자가 질초음파 검사를 받는 도중 환자의 동의 없이 학생이 들어왔고 의사가 그 학생에게 질초음파 검사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781 (78.1)
3	내과 의사가 청진기 진찰을 하던 중 사전 설명을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 안에서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경우	761 (76.1)
4	대학병원에서 성기나 유방, 항문 진료 시 의과대학생 다수가 들어와 진료실 한쪽에 서서 진료를 참관하는 경우	772 (77.2)
5	심전도 검사 시, 심전도 검사 담당 의료진 외의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심전도 전극이 잘 붙어있는지 확인한다고 말하며 상의를 들추어 보는 경우	648 (64.8)
6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에게 진료 시마다 매번 '얼굴이 참 예쁘다. 네 남자친구가 부럽다'라고 말하는 경우	802 (80.2)
7	성인 여성 환자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응급실 의사가 환자에게 성경험 여부나 최근 성관계 한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	433 (43.3)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연령대별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구분	계	상황							
		1	2	3	4	5	6	7	
계	1,000	711 (71.1)	781 (78.1)	761 (76.1)	772 (77.2)	648 (64.8)	802 (80.2)	433 (43.3)	
연령대	20대	176 (79.6)	190 (86.0)	189 (85.5)	189 (83.3)	141 (63.8)	158 (71.5)	68 (30.8)	
	30대	189 (75.3)	209 (83.3)	203 (80.9)	203 (80.1)	181 (72.1)	210 (83.7)	115 (45.8)	
	40대	187 (67.5)	212 (76.5)	211 (76.2)	211 (78.7)	172 (62.1)	234 (84.5)	126 (45.5)	
	50대	159 (63.3)	170 (67.7)	158 (62.9)	158 (67.3)	154 (61.4)	200 (79.7)	124 (49.4)	

3. 이용자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성희롱 경험별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성희롱 인식

- ✓ 대부분의 상황에서 성희롱 유경험자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응답을 높아

예) ‘성인 여성 환자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응급실 의사가 환자에게 성경험 여부나 최근 성관계한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에서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433명(43.3%)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응답으로 조사된 반면, 11번 및 12번 행위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유형에서 성희롱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서는 상황 7번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50%가 넘어

4. 상담일지 분석

- 대상 : 2010. 1. 부터 2013. 6.까지 민간 성폭력상담소 3곳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례
- 방법 : 양적 분석, 질적 분석
- 기간 : 2013. 9. ~ 11.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의료기관 이용자 상담사례 건수

년도	A 성폭력상담소	B 성폭력상담소	C 성폭력상담소	계
2010	2	14	1	17
2011	1	10	2	13
2012	2	16	3	21
2013(1~6월)	2	6	1	9
계	7	46	7	60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피해자 특성: 연령

연령대	빈도(명)	%
10세 미만	1	1.7
10	6	10.0
20	14	23.3
30	13	21.7
40	4	6.7
50	2	3.3
60	1	1.7
미상	19	31.7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피해시기

년도	빈도(명)	%
2008 이전	5	8.3
2009	6	10.0
2010	16	26.7
2011	8	13.3
2012	17	28.3
2013	3	5.0
미상	5	8.3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가해 당시 연령

연령대	빈도(명)	%
20	1	1.7
30	6	10.0
40	5	8.3
50	7	11.7
60	3	5.0
70	2	3.3
미상	36	60.0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가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직업 및 진료과목

구분		빈도(명)	%	
간호사		2	3.3	3.3
의료기 사	방사선사	3	5.0	8.3
	물리치료 사	2	3.3	
기타		4	6.7	6.7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가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직업 및 진료과목

구분		빈도(명)	%	
의사. 한의사	한의원	10	16.7	81.7
	내과	6	10.0	
	산부인과	4	6.7	
	정형외과	3	5.0	
	성형외과	2	3.3	
	신경외과	1	1.7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가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직업 및 진료과목

구분		빈도(명)	%
의사. 한의사	정신과	1	1.7
	치과	1	1.7
	이비인후과	1	1.7
	외과	1	1.7
	미상	16	26.7
			81.7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병원규모

구분	빈도(명)	%
의원급	14	23.3
병원급	3	5.0
종합병원급	4	6.7
검진센터	3	5.0
개인 치료실	6	10.0
미상	30	50.0
계	60	100.0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성희롱 피해유형

구분	빈도(명)	%
신체적	45	75.0
시각적	0	0.0
언어적	4	6.7
기타	3	5.0
복합적	8	13.3
계	60	100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신체적 성희롱과 복합적 성희롱 양태

신체적 성희롱	빈도(명)	%	복합적 성희롱	빈도(명)	%
추행	39	86.7	언어/신체	7	87.5
강간	6	13.3	언어/시각	1	12.5
계	45	100.0	계	8	100.0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피해내용

✓ 설명부족으로 인한 성희롱

체해서 한의원에 갔는데 의사가 물어보지 않고 옷을 올려서 멋대로 가슴에 침을 놨다. (사례 34)

✓ 신체적 성희롱

고리뼈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의사가 치마 속으로 진찰을 하면서 음부에 손을 댔다. (사례14)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피해내용

✓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희롱

마취 동안 비하적인 말을 하고 하의를 벗겨서 음모 부분을 쓸고 다리도 벌리고 안쪽을 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사례51)

✓ 언어적 성희롱

유방에 종기가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의사가 살이 너무 많이 찼다, 남자가 좋아하느냐, 저녁마다 무엇이 당겨서 먹느냐는 말을 했다. (사례9)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피해내용

✓ 복합적 성희롱

청진기를 대고 의사가 다리 사이로 자기 무릎을 바짝 붙이는데 무릎으로 밀쳤더니 불편한지 물러났다가 다시 갖다대더니 하는 소리가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라고 했다.

(사례37)

✓ 환자 가족에 대한 성희롱

엄마가 암으로 입원해 있는 중에 담당의사가 할 말이 있다며 자기 방으로 불러서 자기랑 성관계를 가지면 잘 보살펴주겠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침대로 데려가려고 했다. (사례32)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피해대응

구분	빈도(명)	%
무대응	23	38.3
항의	19	31.7
고소/신고/민사소송	8	13.3
인터넷 공개	1	1.7
민원/진정제기 등	6	8.3
미상	4	6.7
계	60	100.0

4. 상담일지분석 : 조사결과

● 피해대응

- ✓ 윗배가 아파서 내과에 갔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대여섯 번 눌러 가면서 10분 넘게 진찰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니 카페 소리를 들으려 했다며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사례42)
- ✓ 학교 건강검진 차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고 청진기를 가슴 위 부분에 댔다.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쾌감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잠잘 때마다 생각나고 그 의사를 죽이고 싶다. (사례43)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 심층면접 피해내용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가해자 직종	의사	23	피해 횟수	1회	20
	의료기사	3		2~5회	5
	간호사	1		10회 이상	1
가해자 성별	남성	26	피해자 성별	남성	0
	여성	1		여성	26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심층면접 피해내용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피해 경험 진료기관/ 진료과목	한의원	6	피해 경험 진료기관/ 진료과목	산부인과	2
	치과	4		성형외과	1
	내과	3		통증의학과	1
	정신과	2		재활의학과	1
	이비인후과	2		미상	4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심층면접 피해내용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피해 경험 진료기관/ 진료과목	한의원	6	피해 경험 진료기관/ 진료과목	산부인과	2
	치과	4		성형외과	1
	내과	3		통증의학과	1
	정신과	2		재활의학과	1
	이비인후과	2		미상	4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심층면접 피해내용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피해 시 연령	10대	대응 내용	고소	6
	20대		병원에 문의 또는 항의	9
	30대		당사자에게 항의	1
	40대		성폭력 상담 기관서 상담	18
	50대		주변인에게 이야기	1
	미상		병원을 옮김	5
		무대응	1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진료과정상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

✓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내담자가 목이랑 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코랑 입을 진찰하기에 앞서 허벅지 양 옆이랑 옷 위의 배를 만졌고, 청진기를 가슴에 갔다 대면서 손도 올려놓았다고... 그렇게 마치고 나서 [내담자가] 간호사에게 원래 저 선생님이 저러시냐고 물었더니 간호사는 얼버무리듯이 네, 네 그랬다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힘드니까 상담까지 이어진 사례. (지원자 4)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진료과정상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

✓ 환자의 외모 평가

왜 아픈지를 물어봤을 때 학생이고 한창 논문 쓰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가 가볍게 무슨 전공이나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는 좀 제 외모? 옷차림? 그런 스타일이나 성향에 대해 계속 지적 아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겨울이고 춥고 아프기 때문에 그냥 커다란 점퍼나 이런 옷차림을 하고 [병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행색의 초라함이나 꾸미지 않음에 대해 [비교를 하고], 의료랑 되게 상관이 없는데. (중략) 아파죽겠는데 그것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골 때리고 황당하고. (피해자 2)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진료과정상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

✓ 신체 과다 노출과 폐쇄적인 공간

[첫 번째 한의원에서는 침 맞는 베드기] 커튼이 하나하나 방마다 쳐져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소리나 인기척의 느낌상 대체로 여자 분들이 누워계신데 전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방방이다 그렇게 커튼을 닫고 잘 알 수 없는 형태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게 전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던 두 번째 한의원이 이렇게 커튼은 없었지만 한편으로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계속 남자 의사들과 계속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있으니까 문이 좀 열려있으면 좋겠고. (피해자 2)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문제제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 ✓ 의사에 대한 신뢰
 - ✓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
 - ✓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 차
 - ✓ 증거부족
 - ✓ 불명확한 처리절차
 - ✓ 의사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 ✓ 지속진료의 필요성

5.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결과

- 개선방안 의견
 - ✓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
 - ✓ 윤리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 ✓ 명확한 처리 절차 마련
 - ✓ 간호사 또는 동반자 입회
 - ✓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발제 2

진료과정 성희롱에 대한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발제 3

진료과정 성희롱 규제 현황과 대안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진료과정 성희롱 규제 현황과 대안

2014. 4.

김 정 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공감   삼원 한국선뎁력상담소

1. 진료과정 성희롱의 법적 규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1개월

2. 진료과정 성희롱의 자율적 규제

- (구)의사윤리지침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는 내진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의 입회 아래 시행하여야 한다”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와 환자와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6년 개정 이후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진료과정 성희롱의 자율적 규제

- 치과의사윤리지침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적 유혹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한국간호사윤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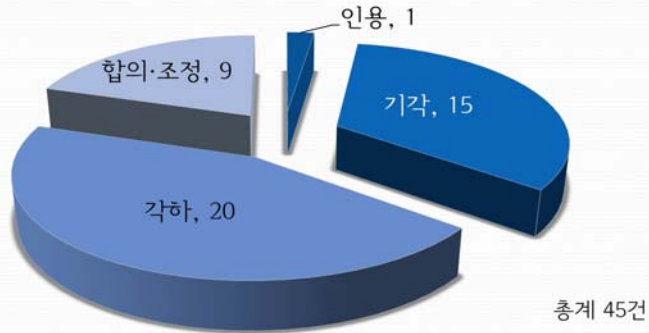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적 접촉으로 오인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취약계층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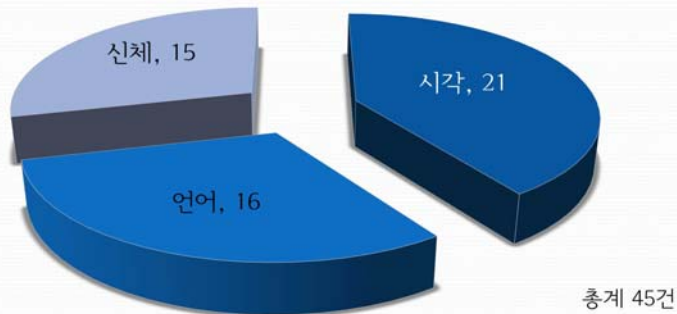
3.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결정례 및 판례

<분석 대상 진정례, 결정례 처리 결과>



3.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결정례 및 판례

<분석 대상 진정례, 결정례 피해 유형(중복)>



3.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결정례 및 판례

- 불필요한 성적 표현
- 설명 부족
- 공개된 장소에서 환복
-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참여
- 동의 없는 실습생 참관

3-1. 불필요한 성적 표현

- 사례

유방초음파 도중 수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자, 피신청인(레지던트)이 “아래도 수술한 사람이 위도 수술하고 싶으냐”고 하였고, 신청인에게 요즘 부모들의 과잉 교육열에 대해 의견을 묻길래 대답하지 않았더니 “너무 황홀해서 그러시냐”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낌

➡ 성희롱 인정

3-2. 설명 부족

- 사례
 - 가슴 청진 또는 검사 시 과도한 신체 접촉 또는 신체 노출
 - 환부 외의 신체 부위 촉진
 - 설명 도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
 - 내밀한 신체 부위 진료 시 환자 동의 없이 이성 의료진 입회

3-3. 공개된 장소에서의 환복

- 사례

보건소 골밀도 검사 중 방사선실에 소속된 K가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는 검사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함

➡ (합의) 보건소장이 진정인에게 서면 사과,
재발방지 위해 보건소 게시판에 사과문 게시

3-4.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 참여

- 사례
 - 동성 의료진 진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동성 의료진 진료 도중 환자의 동의 없이 이성 의료진 동석

3-5. 동의 없는 실습생 참관

- 사례
 - 초음파 촬영 시 피진정인이 여학생 2명과 함께 들어와 민감한 부위를 가리고 있던 천을 내리라고 하였고, 머뭇거리자 “학생인데 어떻게 습니까?”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임
 - 간호실습생 다수가 보는 상태에서 분만의자에 누운 상태로 내진

4. 성희롱 여부의 판단

- 성적 함의와 진료상 필요성
 - 진료 관련성 있으나 진료상 필요성 넘어선 언동 + 성적 함의 인정
 - 진료상 필요 범위 내의 언동 + 진료 목적, 성적 의도 공존
 - 대체 가능한 다른 진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 + 성적 함의 인정
 - ➔ 진료상 필요성이 성적 함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진료상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의학 지식의 문제
 - 진료상 필요성이 아닌 진료상 편의에 따른 진료 방법은 재고 필요

5. 진료과정 성희롱 규제 방안

진료 객체로서의 환자



인격적 존재로서의 환자

5. 진료과정 성희롱 규제 방안

의료진

- 성희롱 예방 노력
- 충분한 설명, 이용자 존중

의료기관

- 의료진 주체별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 마련
- 이용자에게 진료과정 성희롱 내용 및 피해 구제 관련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 진료과정 성희롱 실태조사 정례화
- 의료진 단체에서 보수교육에 진료과정 성희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 성희롱 행위자인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면허 규제 방안 마련
- 환자의 성적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 기준 정비

의료진 단체

- 진료과정 성희롱 실태조사
- 윤리 규정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및 규제 포함
- 보수교육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및 규제 포함
- 진료과목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 조사 및 문제된 의료진의 규제

교육기관

- 의료윤리 교육에 진료과정 성희롱 문제 포함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구성

성희롱의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의미
- 성희롱 판단 기준: 환자 입장 고려해야
- 진료 필요성과 성적 함의의 문제

의료진의 윤리

- 직역별 단체의 윤리지침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의도적 성적 접촉
- 의료진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줌
- 성적 시선
- 성적 표현, 성적 농담, 성적 비하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 성적 접근
- 설명 부족 및 환자에 대한 존중 없음
-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 동의 없는 또는 과도한 실습생 참관
- 환복·내진·치료 공간에 차폐시설 부족, 과도한 신체노출
- 공개된 상황에서 성적 사생활 질문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설명 부족 또는 환자에 대한 존중 없음

사례 제시

- 사례1) 감기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내과 의사가 청진기 진찰을 하던 중, 사전 설명을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 안에서 브래지어를 들어올리고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댄
- 사례2)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였는데 의사가 허벅지 안쪽, 가슴 근처 겨드랑이 등을 계속 만지고 주물렀음
- 사례3) 검사 도중 설명 없이 의사가 직접 환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진료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설명 부족 또는 환자에 대한 존중 없음

유형 설명

-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만 의료진이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진료 도중 환자의 맨몸을 노출시키거나 의료진이 옷 속을 들여다보는 경우, 여성 환자의 가슴 청진, 발통점을 찾기 위한 환부 외 촉진, 복진, 탐혈, 원위취혈, 추나 등 진료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설명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옷 위 또는 옷 속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설명 부족 또는 환자에 대한 존중 없음

성희롱 성립 여부

환자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은 것 자체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료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행위에 성적 함의가 있었거나, 진료 행위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여 진료 목적을 넘어서는 성적 언동이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

의료진에게는 옷 위가 아닌 맨살에 청진하는 것, 촉진 등은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나 노출에 당황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환자가 이후의 진료에 방어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안 제시

-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에 환자에게 청진, 촉진 부위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료의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환자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환자가 어떤 검사나 치료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 도중이라도 환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중단하여야 합니다.
- 환자가 어릴 때에는 환자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설명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판단력이나 동의 능력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보호자 등 제3자가 입회하도록 합니다. 내밀한 신체 부위 진료 시에는 제3자 입회가 가능함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환자가 제3자 입회를 원하지만 입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진료를 연기하거나 다른 의료진의 진료를 원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는 반드시 유방, 성기, 항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합니다. 탈의, 환복하거나 옷을 들어올려야 할 때는 환자가 직접 하도록 합니다.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환자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사례 제시

- 사례1) 남성 환자가 비뇨기과 검진 시 남성 간호사의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례2)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진료 시 여성 의사의 특진을 요청하여 여성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질 초음파 검사 도중 갑자기 남성 의사가 들어와 두 명의 의사가 함께 논의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환자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유형 설명

환자가 동성 의료진의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주 진료자는 환자와 동성이지만 협진 등의 사유로 이성 의료진이 진료실에 동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밀한 신체 부위의 진료 시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의료인일 뿐인데 왜 이성으로 생각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때에는 환자의 성적 수치심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환자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성희롱 성립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례 중에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시도에 진료 목적이 인정되고 동성 의료진에 의한 진료 요청이 결과적으로 수용되어 환자가 이성 의료진의 앞에서 탈의하거나 이성 의료진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성 의료진의 진료 자체가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가 요청됩니다.
- 동성 의료진의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를 비난 또는 회화화하거나 진료목적만을 내세워 목살하는 경우에는 인격의 침해가 되며, 의료진의 반응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게 됩니다.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환자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문제가 되는 이유

의료진은 환자를 성별과 무관하게 단지 환자로서만 보도록 교육받습니다. 반면 환자는 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성적으로만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로 비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수치심을 야기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고,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예) 환자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대안 제시

- 환자가 동성 의료진의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동성 의료진을 배치하도록 노력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동성 의료진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성 의료진이 진료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대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이성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것인지, 나중에 다시 내원할 것인지, 다른 의료기관의 연계를 원하는지 등을 질문하여 환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성 의료진의 진료를 강요하거나 동성 의료진을 요청하는 환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 환자가 동성 의료진을 요청하여 동성 의료진이 진료를 하는 도중에 이성 의료진이 협진 등의 목적으로 동성할 필요가 생기는 때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내진 등 환자가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을 때에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붙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개관

실태조사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기준안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개념을 기준으로 진료과정 성희롱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의료진 단체의 윤리 규정 중에서 진료과정 성희롱과 관련된 조항을 제시한 다음,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사례를 든 뒤 성희롱 해당 여부, 해당 언동의 문제점, 대안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유형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례와 성희롱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성희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기준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의 행위 유형

- 의도적 성적 접촉
- 성적 시선
- 의료진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줌
- 성적 표현, 성적 농담, 성적 비하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 성적 접근
- 설명 부족 및 환자에 대한 존중 없음
-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 동의 없는 또는 과도한 실습생 참관
- 환복·내진·치료 공간에 차폐시설 부족, 과도한 신체노출
- 공개된 상황에서 성적 사생활 질문

◎ 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성적인 함의를 갖는 말이나 행동으로 환자,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여부는 ①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②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성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인식가능하다면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되는 언동이 진료 목적에 따른 정상적 의료행위의 범주 내에 있고 언동의 성적 함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언동의 성적 함의가 입증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진료 목적과 연관이 있더라도 성적 함의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였거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말이나 행동이 있고, 해당 언동의 성적 함의가 인정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의료진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의료진의 윤리

의료인은 자신의 지위나 환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성희롱해서는 안 되며, 동료 의료인의 성희롱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사 윤리지침 (대한치과의사협회, 2006.5.15. 제정)

4.2. (신뢰성 손상가능성이 있는 관계 금지) 치과의사는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거나 환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인관계를 피해야 한다.

4.2.1.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적 유혹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대한간호협회, 2007.2.23. 제정)

제6조(품위유지)

- ⑦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적 접촉으로 오인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 ⑧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취약계층 옹호)

- ①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극빈자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취약계층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성적 접촉

- 사례1) 방사선사가 방사선 촬영을 위해 자세를 잡아준다면서 의도적으로 유방을 만짐
- 사례2) 남성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치료할 때에만 뒤에서 끌어안아 올리는 행동을 함

• 의료진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줌

- 사례1)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도중에 의사가 자신의 모니터에 있는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환자가 보내준 건데 어떠냐”고 물어봄

• 불필요한 성적 표현, 성적 농담 및 성적 비하, 성적 시선

- 사례1) 진료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의사가 자신의 성생활과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환자에게 의견을 물어봄
- 사례2) 산부인과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러 온 성소수자인 환자에 대하여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해 비하하면서 “여성은 출산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말함
- 사례3) 의사가 환자에게 “몸매가 예쁘게 생겼다”면서 진료와 무관하게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음
- 사례4)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중년 여성 환자를 ‘화병’으로 진단하면서 환자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웃으며 노골적으로 질문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 사례1)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딸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머니 치료를 잘 해 주겠다’면서 성적 관계를 요구

〈유형〉

- 의료진이 진료와 무관하거나 진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또는 진료와 관련이 있더라도 성적 의도를 갖고 환자의 유방, 가슴 부근, 허벅지, 엉덩이, 성기, 항문 등 내밀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그 외의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해당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인가?〉

- 성적 시선, 자신의 신체 노출,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보여주기, 불필요한 성적 표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농담, 성적 비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각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성적 언동, 성적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조건형 성희롱, 보복형 성희롱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진은 내밀한 신체 부위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성적 표현이나 성적 농담, 시선의 문제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내밀한 부위를 노출하여 진료를 받는 것 자체에서 이미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하, 불필요한 성적 표현을 하는 것, 성적 시선을 보내는 것 등은 환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 진료 도중의 성적 표현이나 성적 농담 또한 진료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긴장을 풀기 위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내밀한 신체 부위 진료 시에는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개인적인 평을 덧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 성적 접근

사례1) 의사가 장기 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
 사례2)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병원 밖에서 따로 만날 것을 제의하고, 환자에게 데이트 신청

〈유형〉

- 의료진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의료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접근을 하는 경우입니다.
- 성희롱이 문제되는 영역은 대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접근을 지속하는 경우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였더라도 진료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이에서의 성적 접근은 의료윤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인가?〉

-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접근을 지속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의료윤리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

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용자의 온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진과 이용자의 관계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지식의 부족, 치료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제안이나 호의를 거절하는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의료진의 제의를 진료과정으로 오인하거나, 신뢰관계에 기하여 의료진에게 일방적으로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 성적 관계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괴는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와 환자 간의 성적 관계가 있었던 의료진의 상당수가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환자는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 의료진과 이용자가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성적 관계가 형성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등에 대한 주관적 감정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전문적, 객관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자 또한 의료진을 의료진으로서 보기보다는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식하여 진료상의 지시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이용자와의 성적 관계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진은 우월적 지위에서 환자의 사생활, 취향, 감정적 특성, 취약점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진료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진료과정에서 얻은 사적 정보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의료윤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환자,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성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사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표현이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설명 부족, 존중 없음

사례1) 감기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내과 의사가 청진기 진찰을 하던 중, 사전 설명을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 안에서 브래지어를 들어올리고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댄
 사례2)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였는데 의사가 허벅지 안쪽, 가슴 근처 겨드랑이 등을 계속 만지고 주물렀음

〈유형〉

-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만 의료진이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진료 도중 환자의 맨몸을 노출시키거나 의료진이 옷 속을 들여다보는 경우, 여성 환자의 가슴 청진, 발통점을 찾기 위한 환부 외 촉진, 복진, 탐혈, 원위취혈, 추나 등 진료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설명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옷 위 또는 옷 속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성희롱인가?〉

- 환자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은 것 자체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료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행위에 성적 함의가 있었거나, 진료 행위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여 진료 목적을 넘어서는 성적 언동이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진에게는 옷 위가 아닌 맨살에 청진하는 것, 촉진 등은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나 노출에 당황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환자가 이후의 진료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에 환자에게 청진, 촉진 부위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료의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환자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환자가 어떤 검사나 치료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 도중이라도 환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중단하여야 합니다.
- 환자가 어릴 때에는 환자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설명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판단력이나 동의 능력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보호자 등 제3자가 입회하도록 합니다. 내밀한 신체 부위 진료 시에는 제3자 입회가 가능함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환자가 제3자 입회를 원하지만 입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진료를 연기하거나 다른 의료진의 진료를 원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는 반드시 유방, 성기, 항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합니다. 탈의, 환복하거나 옷을 들어올려야 할 때는 환자가 직접 하도록 합니다.

● 환자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사례1) 남성 환자가 비뇨기과 검진 시 남성 간호사의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2)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진료 시 여성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여 여성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질 초음파 검사 도중 갑자기 남성 의사가 들어와 두 명의 의사가 함께 논의

〈유형〉

- 환자가 동성 의료진의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주 진료자는 환자와 동성이지만 협진 등의 사유로 이성 의료진이 진료실에 동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밀한 신체 부위의 진료 시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의료인일 뿐인데 왜 이성으로 생각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때에

는 환자의 성적 수치심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례 중에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시도에 진료 목적이 인정되고 동성 의료진에 의한 진료 요청이 결과적으로 수용되어 환자가 이성 의료진의 앞에서 탈의하거나 이성 의료진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성 의료진의 진료 자체가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가 요청됩니다.
- 동성 의료진의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를 비난 또는 희화화하거나 진료목적만을 내세워 목살하는 경우에는 인격의 침해가 되며, 의료진의 반응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진은 환자를 성별과 무관하게 단지 환자로만 보도록 교육받습니다. 반면 환자는 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성적으로만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로 비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수치심을 야기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고,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환자가 동성 의료진의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동성 의료진을 배치하도록 노력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동성 의료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성 의료진이 진료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대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이성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것인지, 나중에 다시 내원할 것인지, 다른 의료기관의 연계를 원하는지 등을 질문하여 환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성 의료진의 진료를 강요하거나 동성 의료진을 요청하는 환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 환자가 동성 의료진을 요청하여 동성 의료진이 진료를 하는 도중에 이성 의료진이 협

진 등의 목적으로 동석할 필요가 생기는 때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내진 등 환자가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을 때에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 환자 동의 없는 또는 과도한 실습생 참관

- 사례1) 남성 환자의 성기 초음파 촬영에 의사가 여학생들과 함께 들어왔고 성기를 가리고 있던 천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환자가 머뭇거리자 '학생인데 어떻습니까?'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임. 촬영 중에 학생들에게 촬영 부위에 대해서 설명
- 사례2) 조산의 우려가 있어 내진을 받고 있는데 간호실습생 다수가 참관
- 사례3) 분만실에서 한 명의 임산부에게 여러 명의 레지던트, 학생들이 교육목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차례 내진

〈유형〉

-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내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진료를 받고 있을 때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과대학 학생이나 실습생, 수련의 등이 동석하여 진료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성희롱인가?〉

- 오로지 교육목적만이 인정되고 성적 함의가 없음이 입증되면 실습생 참관 자체로서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하거나 환자의 거부 반응을 비난하거나 희화화할 때에는 인격을 가진 환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해당 반응이 성적 언동으로서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병원은 진료기관이자 교육기관이고,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교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구별하여, 교육에 동의하는가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에 내원할 때 자신의 몸이 교육에 이용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며, 갑작스러운 학생이나 수련의의 등장에 당황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거나 자신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전시’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 학생이나 실습생, 수련의 등이 참관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동의에 따라 학생, 실습생, 수련의 등이 동석하는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며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 환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 환복·내진·치료 공간에 차폐시설 부족, 과도한 신체노출

- 사례1) 창문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실 내에서 별도의 차폐시설 없이 옷을 벗고 가운데로 갈아입도록 함
- 사례2) 산부인과 내진 장소가 커튼으로만 가려져 있고 커튼 밖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여서 환자가 불안감을 느낌
- 사례3) 한의원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엎드려 침을 맞고 있는데 옆 침대와의 사이에 차폐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환자와 의료진들이 들락거림
- 사례4) 진료를 위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의사가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전부 걸어냄

〈유형〉

- 검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노출한 상태에서 진료하는 장소가 공개되어 있거나 적절한 차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료 도중 불필요하게 환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수치심을 야기한 경우입니다.

〈성희롱인가?〉

- 환복이나 내진 등 신체의 내밀한 부위가 노출되는 진료 장소가 적절한 차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의 미비에 성적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시설 미비 자체로써 곧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신체를 드러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노출된 환경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부위를 성적 시선으로 훑어보거나 성적 표현으로 신체를 평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각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수치심을 느끼는 환자의 반응이나 문제제기를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해당 반응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그 결과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차폐시설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벗거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 환자는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수치심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환자는 더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탈의실, 내진실, 치료실의 차폐시설을 적절히 하여 환자가 환복 또는 진료 시 불필요하게 진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신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옷을 벗은 상태에서 진료할 때에는 환자의 몸을 덮을 수 있도록 하고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 공개된 상황에서 성적 사생활 질문

사례1) 산부인과 진료 전 간호사가 혼인여부, 성관계, 출산 경험,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을 대기석 인근 접수대에서 구두로 질문하여 환자의 성적 사생활이 대기중인 사람들에게 노출됨으로써 환자가 수치심을 느낌
 사례2) 진료실 문이 열려 있고 병원에 함께 내원한 가족이 문 바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성관계,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을 질문

〈유형〉

- 진료를 목적으로 성적 사생활에 대하여 질문하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거나 청각적으로 적절히 차단되지 않아 제3자에게 환자의 성적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성희롱인가?〉

- 성적 사생활의 질문은 진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의 인격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성적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진료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혼인 여부나 성관계에 대한 질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자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환자가 거짓으로 답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성적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에는 진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질문과 답변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질문의 의도를 설명하고, 환자가 질문으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토론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의 토론요지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의 토론요지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I. 발제문 1 (의료시설 이용자 성희롱 경험실태)에 관한 토론

1. 성희롱의 개념

(발제문)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것.” (연구보고서 pp.6~7)

(토론) 성희롱은 업무관련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적 언동이다.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성폭력이 된다.

2. 성희롱의 범위

(발제문) “강간… 성폭력범죄들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해 성희롱이 개념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움”

“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폭력 범죄를 성희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하는 입장과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미한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좁게 보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연구보고서 p.7)

(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열거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이라 하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개념 : 진료기관 성희롱

(발제문)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하는 경우

(토론) (1) 진료기관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의료진(의료인 및 의료기사)으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료진이 아닌 진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은 진료기관 예방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진료기관의 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2) 성희롱 상대방인 의료기관 이용자는 이용자 본인을 말하는가? 발제3(연구보고서 p. 204)에서는 성희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등”이라고 했는데 연구진들은 의료진이 하는 성희롱의 상대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3) 진료기관 성희롱의 형태와 피해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하는 경우”로 기술하고 있는데 두 가지 재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이란 문구가 있어야 하는가? 성적 언동의 결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시키는 경우라면 그러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2)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하는 경우”로만 개념정의를 하면 보복형 성희롱과 조건형 성희롱이 누락하게 된다. 즉 성적 언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진료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 언동을 조건으로 진료상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진료기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본다.

4.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준 의료진 성별

(발제문)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준 의료진 성별에 관한 조사결과- 남성이 80.5%, 여성이 37.3%

- (토론) (1) 남성, 여성을 합하여 100%가 나와야 하는데 통계수치는 정확한가?
(2) 여성의료진과 남성의료진이 성희롱을 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 차이는 없는가?

II. 발제문3 (진료과정 성희롱 규제 현황과 대안)에 관한 토론

1.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연구보고서 p.20, p.201, 발제)에서 의료법관계법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자격정지 1개월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서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만들고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지 않다.

최근 「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과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폭력 범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고 하며 비위가 약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을 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도 할 수 있는 등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제재를 강화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의료관계법도 개정하여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2. 진료과정 성희롱예방기준안 구성

- (1) “성적 합의”는 어떤 뜻인가? 연구보고서 p.207에는 “성적 의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성적 합의가 성적 의도와 같은 뜻이라면 성희롱의 성립요건 구성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뿐 아니라 대법원도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성질을 가지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등)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한 성적 언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러한 성적 언동의 수용을 조건으로 특혜를 제시하거나 제시한 행위이면 성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들이 말하는 성적 함의란 성적 성질을 가지는 언동으로 이해해야지 성적 의도가 있는 언동으로 보면 성적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성희롱의 성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2)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조) 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646)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3) 발제Ⅱ의 결과를 볼 때, 의료기관 이용자와 의료진의 성희롱에 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예방기준안에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성희롱에 관한 고충처리절차,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한 보다 정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토론

진료과정 성희롱 문제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진료과정 성희롱 문제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I.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진료현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의료인들 사이에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실패 혹은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의료인들은 언어로 인한 성희롱 외에 진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료의 일부이지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의료진의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도 예민한 부위를 진찰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일임
 - 언어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진료에 필수적인 질문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임.
- 결국 의료인들이 진료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야기한 상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간 상당한 정도의 인식(판단)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상호 의사소통 및 상이한 관점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II. 대안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정중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임

- 다만, '진료과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료상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진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질문이나 진찰 행위가 이용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으로 오인되고, 그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의료진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감이 있음
 -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2013. 6. 19.)등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환자와 의료인간 소통 부족과 환자의 정보 부족을 초래하고, 그 결과 의료인이 성희롱 상황에 놓일 것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료하거나 방어적으로 진료하게 되어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 ※ 동법 취업제한 규정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행위의 노무도 사실상 제공할 수 없도록 광범위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범죄의 내용이나 경중 및 행위 태양에 상관없이 10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들은 진료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움

- 물론,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진료의 주체인 의료진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변화, 환자에 대한 존중 등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임에 공감하나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와의 상호 의사 소통과 교육이 필요함
 - 환자들도 진료과정에서의 특성상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함
 - 의료인들에게 대한 대학교육, 수련과정, 보수교육 등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검토 필요

- 아울러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진료과목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상호신뢰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 진료라는 의학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듦으로써 환자들이 진료에 있어서 불가피한 언어나 행동을 성희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불합리한 아첨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규제할 수도 있을 것임.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토론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박주희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대한한의사협회

여군대위 성추행 사건부터 장애인 및 아동 성폭행 사건까지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화두중 하나가 성범죄 사건이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약자층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한 사건 후에도 정신적 피해 등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점에서 어쩌면 가장 악랄한 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성범죄들이 의외로 진료실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 볼수 있다. 대부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찾아오게 되는 진료실이 오히려 또 하나의 악몽의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보고서 서두에 언급되었듯이 진료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진료과정 중 신체접촉의 빈도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에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는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매우 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로 인해 받을 상처 및 충격은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받을 그것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진료상 꼭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됨으로써 정확한 진찰을 못할 때 생길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위험요소가 있다. 즉, 성추행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의료인은 소극적인 진찰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병의 정밀한 진단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찰을 추구하게 되면 성추행 의심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유념해야하는 일종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희롱이란 어떻게 보면 매우 정신적인 부분이 큰 범죄이기에 주관적 혹은 개념적 차이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즉 의료인이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이는 이번 조사 결과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느끼는 상황에 대한 차이가 현격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점이 여실히 나타난

다. 즉 진료과정 중에서 환자의 몸을 노출시키는 경우 환자에게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료인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진찰 및 검사 상 제 3자를 참관시키는 것 역시도 의료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용자가 충분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형병원 등 보다는 아무래도 의원급에서 좀 더 발생율이 높을 수 있다. 환자에게 이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 등이 경제적 인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급에서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기관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겠다. 즉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하는 것이며, 그 교육의 정도와 양자체가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일종의 교육상의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간극의 경우 의료적인 진단 및 처치를 위해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의료인과 보조인이 모두 숙지할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할 것이며, 진료 전 뿐만 아니라 진료 중, 그리고 진료 후에도 이를 연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게다가 의료인이 진료에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환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효율성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종합 병원급보다는 의원급의 의료기관이 80%에 육박하는 한의계의 경우 1차 의료를 진행하는 곳이기때문에 환자에게 일일이 그리고 세심히 이러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수행할 능력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혹여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 들은 사후라도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성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이 최근 대한민국의 화두 중 하나다 보니 여러 기관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교육적 시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직원규모가 영세할 수밖에 없는 의원급의 경우 이러한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할 부분도 존재한다. 즉 교육의 의무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규제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서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 중 하나인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보수교육으로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한다. 보수교육의 기본 목적이 의료인으로서의 소양을 증대시키는 것이기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 좀 더 양질의 안전한 의료를 시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도 충분히 환영할만한 부분이라고 보며, 또한 이를 확대시켜서 학부 교육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필수 요소로 넣었으면 한다. 특히 환자들이 성추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에 대해서는 학부시절부터 이를 인지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의료인으로서 환자에 대한 배려도 항상 인지할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과 더불어 앞서 간단히 언급한 사후적인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것은 일종의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지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겠다. 특히나 이러한 노력은 의료기관내의 인프라적 빈부 격차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이므로 1차 의료기관이든 종합병원이든 차별 받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진료이후에도 성추행관련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하며 또한 이러한 장치를 악용하여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곤경에 처하지 않는 안전장치도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교한 행정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몇몇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며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환자에게는 부담을 갖지 않고 문의를 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면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는 충분히 소명을 하고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중립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의료인 역시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진료에 임할수 있으며 환자 역시 안전에 대한 믿음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맺음말)

성추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굉장히 악랄한 범죄이기에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범죄중 하나이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가 진료과정에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의료처치를 받는 환자들이 진료과정 자체를 조금이라도 불신하고 불안해한다면 의료인으로서 이는 참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게 진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

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교육으로는 따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진행하기 보다는 보수교육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학부과정에서 충분히 학습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보조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진료과정에서의 문제제기 뿐 아니라 진료이후에도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중립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적 분쟁 등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의료인과 환자가 충분히 오해를 풀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뒷받침은 의료기관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의료기관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편안하게 진료를 수행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토론

아동·청소년·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행정제재 제도

이영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아동·청소년·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행정제재 제도

이영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제1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취업제한 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 '06.6.30~'08.2.3 : 확정일로부터 5년간
 - '08.2.4~'09.12.31 :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취업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 조회의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 (경력 조회방법) 관련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경찰서 신청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성범죄자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 폐쇄

1

제도개요

0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또는 운영 제한됨(법제56조)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성인대상 성범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02 제도 도입배경

- 유치원, 학교, 학원, 아파트,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들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

03 주요내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및 방법
- 성범죄경력 조회 미 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조치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현황

1 취업제한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2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시설(기관)별 확대 적용시점
 - 2006.6.30부터 적용
 -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보호·개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2008.2.4부터 적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2012.8. 2부터 적용(형확정일 기준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 2013.6.19부터 적용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

3 취업제한 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노무제공 포함) 제한

4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법 제56조제1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 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기타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6.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 14, 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기타>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시행령 제17조제8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체육시설(시행령 제2조제1호, 제3조, 시행령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7.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제52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9.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2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2.8.2 부터 시행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3.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여성가족부	'12.8.2 부터 시행
14. 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6.19 부터 시행
15.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	경찰청	'13.6.19 부터 시행
16.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 제9조의2 참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3.6.19 부터 시행
17.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6.19 부터 시행
18.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3.6.19 부터 시행

5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법 제 56조제3항)
-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 제 56조제3항) 성범죄의 경력 확인(법 제56조제2항)

6 법 위반 시 조치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7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 권한 위임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교육장),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됨(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3조)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권한위임 현황 : 해당부처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관련('13.6.19. 시행)

3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1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는 조회대상자에 따라 경력조회 의무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56조제3항, 시행령 제25조).
 - 경력조회 의무자 및 조회대상자

경력조회 의무자	조회대상자	비 고(주요 구비서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13.6.19부터 본인 동의서 불필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
 - 경찰서는 '범죄경력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만 확인 회신

3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서식 5),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제출(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가능)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동의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 대체교사와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1 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이 의무화 됨.(’12. 8. 2부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2 점검·확인 추진체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간계획 등에 의한 점검·확인 및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확인 추진

점검·확인 주관기관	점검방식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연간) 계획 수립 후 점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교육청) 공동 점검가능)
* 지자체,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교육청 (연간) 계획 수립 후 점검

3 권한의 위임 및 위임기관 현황

- 권한 위임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법 제58조)
 -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장

5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1 제도개요

-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에 3개월 이상 공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7조)

2 공개방법 및 절차

- (공개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법 제57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 (공개기간)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공개함.
- (공개방식)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 (적용대상) '12.8.2 이후 추진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위반 등 점검·확인 결과

3 점검·확인 결과 공개 절차

● 기관별 점검·확인결과 공개 절차

점검 주관기관	점검결과 제출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점검 포함)	☞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자체, 교육청 등	☞ 시·도(특별자치시·도 포함),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시·군·구, 교육지원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도, 교육청(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여성가족부 공개(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부 처 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공개내용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사항	총괄개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분류명(분류별 전체 개소수)		전체 개소 (기준일 :)	
		예) 학교(개소), 유치원(개소), 학원(개소)			
		점검·확인 기간		~	
		점검·확인 기관 수		예) 학 교(개소) 유치원(개소) 학 원(개소)	
		점검·확인 인원(조회인원수)		예) 학 교(개소) 유치원(개소) 학 원(개소)	
		점검·확인기관 중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현황 및 조치사항	기관명	주 소	운영 또는 취업자 수	조치결과 또는 조치필요 사항
			예) ○○특별시 (광역시자치시 또는 도) ○○시(군·구)	예) ○명 (운영자 수 ○명, 취업자 수 ○명)	예) ○○조치 또는 ○○조치필요
공개기간	~				
공개장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기타사항	기관별 점검확인 결과 현황(서식8) :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참 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2006.6.30. 시행)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사람의 심신상실을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미수범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

- 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
 -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미수범도 처벌)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제3호)
-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 성인대상 성범죄(2010. 4.15 시행)

●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목적 등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3조부터 9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 제12조는 '13. 6.19.부터 적용

6

성희롱에 대한 형행법 개관

❖ 성희롱의 개념 및 구제절차

구분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 념	주체 (행위자)	국가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고간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고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객체 (피해자)	불특정	불특정	다른 근로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등과 관련하여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 주는 행위
구 제 절 차	피해자 구제절차	없음	있음	있음 (행위자가 사업주일 때 과태료 부과)
	구제방법	-	진정	진정, 신고*
	구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구제판단 구속력	-	없음	있음*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의무 미이행시 구제절차임

1 의료법

- 의료법 제66조 1항 1호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음
 - 의료법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2.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업무정지 1개월 및 2개월)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자격정지 1개월)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자격정지 2개월)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2개월)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업무정지 1개월)
- ※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상습적 반복적으로 행한 의료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면허 취소 사례 있음

불법의료행위 사례에 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사례

- ▶ (사례1)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하여 고가의 치료비를 받고 환자에게 시술
 * (주)알앤엘바이오의 경우 자사 연구소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배양한 후 중국, 일본 등의 협력병원에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벗어나고 있음
- ▶ (사례2)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무허가비만치료주사제(PPC)를 환자에게 사용
- ▶ (사례3)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환자에게 치아미백 시술

2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법 제 22조제1항1호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자격정지15일)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자격정지 3개월)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자격정지 1개월)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자격정지 2개월)

※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상습적 반복적으로 행한 의료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면허 취소 사례 있음

3 진료과정의 성희롱에 의한 의료단체 규제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의사는 진료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와 환자와 합의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접촉을 비록하여 애정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윤리지침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적유혹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적접촉으로 오인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기관 평가항목에서 환자의 신체노출을 보호하는지, 진료 및 처치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차도 평가하고 있음

4

성희롱 예방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보수교육 8시간에 성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편성토록 보수교육 복지부 승인 (의료기관내 성예방 가이드라인 부착)
- 환자에게 미리 예고하고 진료 실시
- 진료과정중에 미리 제3자를 동반하는 입회
-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한의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8

외국 성희롱 관련 제도

● **미국**

의사협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는 영구적 의사 자격중 박탈 가능하고 전국의료인정보은행에 에 저장되어 고용주에게 모두 공개

※ **예방정책**

-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인 성교육
- 샤프롱 제도는 환자보호, 거짓고발을 당할 수 있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함

● **영국, 프랑스**

내밀한 부위 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 샤프롱 제도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점검·확인 결과 공개 요령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인 쇄 | 2014년 4월

| 발 행 | 2014년 4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944 | F A X | (02) 2125-092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17-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